

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2. 3. .
제안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2. 3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되고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에 규정되어있던
장해의 기준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(2018. 9. 21. 字 시행)으로 옮겨
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관련 규정 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장해의 기준 규정 근거 법령 변경(안 제5조제1항)
- 구미시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의 직위 수정(안 제14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및 제37조
 -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3

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9조”를 “제37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회기중”을 “회기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영 제 36조”를 “영 제33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”를 각각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된때”를 “된 때”로, “이미지급한”을 “이미 지급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제4조제1항제2호의 “장애”라 함은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

표3에 규정된 “장해등급”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”를 각각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사망·상해등”을 “사망·상해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인과 위원 4인”을 “1명과 위원 4명”으로, “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”을 “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”으로 하며, 같은

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1. 시의원 중 1명
2. 구미시 소속 실국장 1명
3. 의무직공무원 1명

제10조의 제목 “(심의회기능)”을 “(심의회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단서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경제기획국 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범위 안에서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별지1호서식, 별지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접 수	제 호	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			처리기간
					15일
보상대상원	성 명		생년월일		
청 구 자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			전화번호
	청구내용	☐ 사망 ☐ 장애 ☐ 상해			
보 상 금 수령기관	은행 지점		계좌번호		
상병장소				상병연월일시	
상병원인 및 발생상황					
「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					
년 월 일 청구인 (날인 또는 서명)					
첨부서류	1. 사망의 경우 :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, 사망진단서 1부. 2. 장애와 상해의 경우 : 상병 경위서 1부, 장해진단서 1부. 본인의 위임장(대리인 경우) 3.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(사망·장애·상해 공통)				
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					
년 월 일 구미시의회 의장 (직인)					
구미시장 귀하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접수	제 호	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			처리기간
					즉 시
보상대상의원	성 명		생년월일		
보상금청구내용	☐ 사망 ☐ 장애 ☐ 상해				
사망·장애·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					
심 의 회 심 의 결 과	<결 정> <결정이유> <심의위원 서명>				
「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. 년 월 일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(인) 구미시장 귀하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<u>제39조</u> 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)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7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----- <u>회기중</u> ----- ----- -----: 2. “의정활동비“이라 함은 <u>영 제36조</u> 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----- <u>회기 중</u> ----- ----- -----: 2. ----- <u>영 제33조</u> ----- -----.
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 1. ~ 4. (생략) ②제1항 <u>각호</u> 의 “직무“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“공무상재해 인정기준“에	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 -----

준한다.

제4조(보상금지급기준)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.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1. 2. (생략)

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금액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.

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제4조제1항제2호의 “장애”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“장애등급”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

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
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, 제2호의 경우

---.

제4조(보상금지급기준) ①-----
-----.

될 때-----

----- 이미 지급한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각 호-----

-----.

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제4조제1항제2호의 “장애”라 함은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3에 규정된 “장애등급”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

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-----
----- 각 호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
이내 또는 장애나 손해가 발생
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
각호의 청구자가[별지 제1호서
식]에 의하여 시의회의장을 경
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
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
구성) ①직무로 인한 사망·상
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
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구
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
(이하 “심의회“라 한다) 를 둔
다.

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
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
시장이고 위원은 다음 각호
의 1에 해당하는자중 시장이 임
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의회의원중 1인

2. 시본청 관련 실국장 1인

3. 의무직 공무원 1인

4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
험이 있는 자 1인

③ (생략)

제10조(심의회기능) 심의회는 다

각 호-----

-----.

제9조(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
구성) ①----- 사망·상해
등-----

-----.

②----- 1명과 위원 4
명-----
----- 각 호
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-----
-----.

1. 시의원 중 1명

2. 구미시 소속 실국장 1명

3. 의무직공무원 1명

4. -----
----- 1명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심의회 기능) -----

음 <u>각호</u>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4. (생략) 제13조(심의회 회의) ①·② (생략)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[별지 제2호서식]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<u>범위안</u>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제14조(심의회의 간사) ① (생략) ②간사는 <u>경제기획국 기획예산담당관</u>으로 한다. 제15조(심의회의 수당등)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<u>범위안</u>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	-- <u>각 호</u>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심의회 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범위 안</u>----- -----. 제14조(심의회의 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 <u>기획예산담당관</u>----- -----. 제15조(심의회의 수당등) ----- ----- ----- <u>범위 안</u> 에서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----- ----- -----.
--	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7조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손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

및 절차)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손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
2. 직무상 손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
3.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손해의 경우: 치료비 전액. 다만,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손해 등 보상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보상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시·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(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

한다)로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
2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
3. 의무직공무원 1명
4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

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

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.

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3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40조 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: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
2.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: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능력, 지방공무

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

3.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: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
위에서 지급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
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□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3

장해등급(제40조제1항 본문 관련)

제1급~14급 내용생략